

# 신정부의 경제관련 행정규제 완화 주요 내용

## 재무부

○직·간접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 장애 요인 해소

업체별 상업어음할인 한도 폐지(현행: 전년도 받을 어음금액의 1/2), 중소기업에 대한 3자담보 허용(여신 금지 업종은 제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 운전자금의 대출기간 및 한도 관련규제 완화, 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의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전액 허용, 수출선수금 수령대상 범위를 과거 1년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수출기업으로 확대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시설자금은 주력업체의 대출금 증가억제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 3,000만달러이상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의무제도 폐지, DA방식 수출의 대금회수기간을 물품 선적후 1년에서 2년 이내로 완화, 1억달러이상 대외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1억달러 범위내에서 거래실적의 10%까지 해외 외화보유 허용,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 범위(자산 40억원이상)의 상향조정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강화

법인세 중간예납기한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의 중복 조정,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금액인상(건당5만달러 →10만달러)하고 적용대상업체도 확대(관세환급 연간 실적기준 2,000만원 →5,000만원)

## 농림수산부

○농지·산지의 취득 및 이용 관련

공장 증설을 위한 농지 전용은 1,000평까지 신고만으로 허용

## 건설부

○공업입지 관련

공장용지 분양가격 산정방식의 합리화, 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의 간소화

○건축관련

수개동으로 구성된 공장 건축시 동별 분리준공 허용, 공장 주택건축시 지하층 설치의무 해제, 공업지역 안에서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도시계획 관련 기타

공단내 공장중 분양대금 완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

## 보건사회부

○의료관련

의료용구 검사대상 품목의 대폭 축소

## 노동부

○노사협의·근로기준 관련

근로자 기숙사 설치에 관한 규제 폐지

○산업안전 및 직업안정 관련

산업안전 관련 의무고용인원의 축소 조정, 작업장 환경 및 안전관리 관련 기업주의 부담 및 의무완화, 인력확보의 원활화를 위해 근로자 공급사업 근거법을 제정

○직업훈련, 산재보험 관련

직업훈련비용의 부문별 사용한도 제한 완화, 직업훈련위탁시 지역제한 철폐, 직업훈련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직업훈련 분담금 완화

**환 경 처**

**체 신 부**

○전기통신사업 관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성·데이터 혼합서비스 무선데이터서비스 허용 및 등록절차의 간소화, 전용회선의 음성·데이터 구분제도 폐지 및 전용회선 이용자 유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허가 대상축소 및 목적의 사용범위 확대

○전파관리 관련

소출력 방송중계소 허가절차 간소화 및 민영방송사의 KBS라디오방송 송출시설 구비의무 폐지, 단파라디오 생산 및 시판 허용, 수신전용 무선국에 대한 허가제도 폐지, 이동아마추어 무선국 허가절차 간소화, 생활무선국의 차량탐재 또는 고정용 설치사용 허용

○정보통신기기 생산 유통 관련

형식검정 받은 동일 모델기기 수입시 추가검정 면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품목축소 및 기술기준적합 확인절차 간소화

**과 기 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관련

참여부처별로 상이한 G-7 프로젝트 관리규정을 통합한 공동관리규정 작성시행, 출연연구기관의 10만달리 이상 고가연구기자재 도입심의회 폐지

○기술개발 지원 관련

금융 세제상 지원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에 대기업 그룹의 2개이상 기업이 연합한 종합기술연구소 추가, 기업의 과기처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적용신고제 폐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완화

○배출시설 허가 및 관련기준의 완화.

소음 진동시설의 기계별 허가제를 사업장별 포괄허가로 전환, 환경기술감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지침책자를 발간 활용

○환경관련 의무고용의 합리적 완화

소음 진동분야는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이 겸직 가능, 대기 또는 수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

○폐기물 관련 규제의 합리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예치금과 부담금으로 구분운영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특정폐기물 중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 일정 규모미만의 일반 폐기물 설치는 신고제로 전환.

**상 공 자 원 부**

○공장설립 절차 및 공단관리 운영 관련

도시형 업종 지정기준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 기준공장 면적을 하향조정으로 첨단업종의 부지난 완화,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자격 완화, 공단입주업체의 시설을 50%까지 임대 허용, 공업단지관리공단 운영개편방안의 상반기중 마련

○수출입 관련

수출품질검사 지정품목(120개)에 대한 사전 의무검사제 폐지, 무역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동일물품 반복수출시 한번만의 승인으로 일정기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1만달러이하 소액수출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현생 섬유유틸러 운용제도 개선

○공산품 품질관리 유통 등 관련

품질관리관련 의무고용부담의 완화 및 각종 서류간소화, 대규모 판매장의 허가면적기준 대폭 상향조정